



교육부

수신 수신처 참조
(경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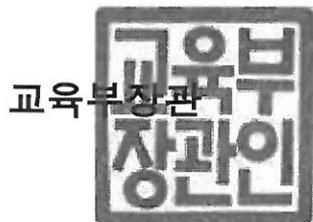
제목 고위험시설 추가지정(PC방) 및 운영제한 조치 안내

1. 관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0882(2020.8.15.)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교회, 식당, 상가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것을 고려해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PC방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선정하고 아래와 같이 핵심 방역수칙을 마련하였습니다.
3. 고위험시설의 경우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이용층인 학생들이 고위험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이용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추가 조치 대상 : PC방
- 적용 기간 : 2020. 8. 19.(18시) ~ 별도 해제 시
 - * 지자체장이 집합금지를 조치한 시설은 금지 해제 전까지 집합금지 효력발생
- 조치 내용
 - 불가피하게 시설의 운영 및 이용시,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집합제한)
 - ※시설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준수사항: 붙임참조
 - 단,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아래의 시설은 인정한 다음날 부터 조치대상에서 제외
 1. 복지부장관이 정한 위험도 하향요건을 충족한 시설
 2.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지역의 환자발생 상황 등에 따라 집합제한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붙임 200815 고위험시설 추가 지정 및 운영 제한 조치(PC방) 1부. 끝.



수신자 각실과 외 4

주무관 기안08/15 학생건강정책 전결08/15
김신혜 과장 조명연

협조자

시행 학생건강정책과-6970 (2020-08-15) 접수 송의여자대학교-4284 (2020-08-18)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교육부 (어진동) / www.moe.go.kr

전화번호 044-203-6814 팩스번호 044-203-6438 / shin8352@korea.kr / 비공개(5)

고위험시설 추가 지정 및 운영 제한 조치

1 적용 대상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전국 PC방)

2 적용 기간

- 2020년 8월 19일(수) 18시 ~ 별도 해제 시까지

3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관리예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홍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4 추진내용 및 절차

① (종대본) PC방을 불가피하게 운영 시 핵심 방역수칙(참고) 철저 준수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집합제한 조치)

↓

② (지자체) 관내 사업장별 집합제한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집합제한 조치 준수 여부 현장점검 (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위험도가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위험시설에서 제외

↓

③ (지자체) 집합제한 조치 미준수 시설에 지자체장이 집회·집합금지 행정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집회·집합금지명령)

↓

④ (지자체) 집회·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고발 조치,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 다만,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이후 바로 고발조치도 가능

○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집회·집합 제한조치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핵심 방역수칙(참고)을 모두 준수

- 지자체는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적용대상 추가 가능, 지자체장이 집합 제한-금지를 조치한 시설은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지자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시 집회·집합금지 행정조치 → 벌칙 부과 등 조치

- 관내 사업장별 집합제한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시 준수사항, 위반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핵심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시 벌칙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지자체장이 위험도가 낮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경우 고위험시설에서 제외(방역수칙 준수의무[집합제한] 해제) 가능

* ①복지부장관이 정한 위험도 허용요건(참고)을 충족한다고 인정한 시설 ②지자체장이 지역의 한지발생 상황 등에 따라 집합제한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집회·

집합 금지 행정조치 실시

☞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의 집회·집합금지명령

-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다만,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이후 바로 고발조치도 가능

참고

PC방 핵심 방역수칙 및 중위험시설 하향요건

□ 핵심 방역수칙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사업주 종사자 마스크 착용 ■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 작성) ■ 방역관리자 지정 ■ 영업 전/후 실내소독, 이용자 사용 후 좌석·물품소독(대장 작성) ■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가능하도록 이용인원 관리 ■ 매장 입구 및 테이블 등에 손 소독제 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증상 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마스크 착용(음식을 섭취 시 제외) ■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 중위험시설 하향요건

○ 지자체장이 위험도가 낮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경우 고위험시설에서 제외(방역수칙 준수 의무(결합제한) 해제)

* ①복지부장관이 정한 위험도 하향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한 시설, ②지자체장이 지역의 한자발생 상황 등에 따라 질할제한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PC방에 대한 중위험시설 하향요건 >

시설명	위험요소	고위험→중위험 하향 요건
PC방	밀집도, 군집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당 이용인원 제한 - 시설면적(허가·신고면적)^{m²} 당 1명 또는 손님 이용 면적(홀·룸 등)^{m²} 당 1명 (안내를 부착 등으로 시설 내 최대 이용가능인원 표시) - 테이블 간 권막이 설치